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00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 박성훈·고동진·우재준

박충권 · 김종양 · 서지영

안상훈 • 백종헌 • 김대식

조배숙 · 임이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 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 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 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 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 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2 중 "홍보"를 "안전신고, 홍보"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저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운영제55조제2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66조의13을 제66조의14로 하고, 제8장에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6조의13(안전신고) 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나 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신고(이하 "안전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위험 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간편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 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 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

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3을 제78조의4로 하고, 법률 제2036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의2를 제78조의3으로 하며, 제9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7 8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 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 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의3(종전의 제78조의2)제2항 중 "제78조제4항에"를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과 제78조제4항에"로 한다.

제78조의5(종전의 제78조의4) 중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	9의2	
교육, 안전훈련, <u>홍보</u> 등을 통	<u>안</u>	
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	<u>전신고, 홍보</u>	
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		
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		
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을 말한다.		
9의3. ~ 13. (생 략)	9의3. ~ 1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		
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8. (생략)

② ~ ⑧ (생 략)

-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생 략)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 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 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 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7호의2에	따른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	기 및	이동형	영상
정보저치리	기기를	말한디	 }. 이
하 같다)의	설치 •	· 운영	

- 8.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②
<u>긴급</u>
구조현장지휘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13(안전신고) ① 누구든 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에 신고(이하 "안전신고"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제66조의14(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생 략)

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 게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간편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 도록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 축 · 운영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 축 · 운영을 위한 제도적 · 기술 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
-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연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⑤ (생략)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 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 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 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 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 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 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 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

<u>서는 아니 된다.</u>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세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1. (생략)
-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u>영</u> <u>상정보처리기기</u>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 라. (생 략) ② ~ ⑩ (생 략) <신 설>

<u>.</u>
1. (현행과 같음)
2
가
<u>영상정보처리기기(이</u>
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u>기기"라 한다)</u>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
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 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 다.
- 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 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 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 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71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거 나 제78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

<신 설>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① (생 략)

②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의3(벌칙) (생 략)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 제78조의5(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 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 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 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 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과 제78조제4항에-----제78조의4(벌칙) (현행 제78조의3 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 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 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 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3.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외에 사용한 자